

전안법 개정! 어떻게 달라졌나?



2017년 12월 전면 개정된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전안법)」이 7월부터 시행되었다. 개정 「전안법」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안법」의 제정 및 개정과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글 | 조영재 법무법인 광장 미국변호사 / 법학박사(Ph.D./J.D.)



2017년 1월 처음 시행된 「전안법」은 인터넷 판매업자의 정보제공 의무부과 등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과 관련된 정부의 사후적인 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도 있었으나 사전적 안전규제를 완화해주기 위한 목적도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즉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에 대해 각각 적용되던 「전기용품 안전 관리법(전기용품법)」과 「품질경영 및 생활용품안전 관리법(품공법)」을 하나의 법체제로 통합해 제조자와 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는 것 역시 「전안법」의 중요한 제정 이유였다. 이러한 통합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전기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체제로 편입시키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품공법」상 자율안전확인대상제품, 안전·품질표시대상제품으로 분류되던 생활용품이 각각 「전기용품법」상 안전확인대상제품,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으로 분류되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서는 위해성에 대한 특별한 고려 없이 안전규제가 강화되었는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자 등이 기존 「품공법」상 요구되지 않던 시험검사와 KC마크 표시의무를 새롭게 부담하게 된 것이 그 예라고 할 수 있다. 생활용품에 대해 강화된 안전규제는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 이외에 구매대행업자 등에게도

적용되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마크 없는 구매대행 행위 등도 금지되었다.

최초 「전안법」, 위해성 고려 없이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규제 강화 결과 초래

생활용품의 강화된 규제에 대해 소상공인, 구매대행업자 등을 중심으로 시험인증 등에 소요되는 과도한 규제준수 비용과 해외직구 사이트와의 역차별 등에 대한 문제제기가 있었다. 이에 정부는 2017년 3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에 대해 시험결과서 보관의무, 인터넷을 통해 판매되는 해당 생활용품에 대한 KC마크 게시 의무, 생활용품 구매대행업자의 안전인증, 안전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관련정보의 해당 인터넷 게시 의무, KC마크 표시 등이 없는 생활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의무 등에 관한 「전안법」 규정의 적용을 2017년 12월까지 유예하는 조치를 취했다.

유예기간 중 정부는 다양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 유형인 안전인증, 안전확인, 공급자적합성확인 이외에도 안전기준준수라는 유형을 신설했다. 더불어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해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적용되는 시험, KC마크 표시 등의 의무를 면제하는 개정안을 마련해 2017년 12월 국회를 통과한 것이 개정 「전안법」이다. 개정 「전안법」에는 위해성 정도, 제품 및 사업형태의 특수성 등이 고려되었다. 주요내용 및 사업자가 유의할 사항을 예시적으로 살펴보도록 한다.

우선 개정 「전안법」은 기존 39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중에서 제품의 특성, 중대사고의 발생 사례, 외국의 안전관리제도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낮은 의류와 안경테, 가족제품 등 23개 품목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했다. 이들 생활용품에 대해 사업자는 안전기준에 부합하는 제품을 제조·수입할 의무는 있지만, 안전성 검증을 위한 시험검사, KC마크 표시, 인터넷 판매 시 안전정보 게시 등의 의무는 부담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사업자가 자발적으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KC마크를 부착하는 행위는 안전기준을 준수했다고 하더라도 소비자의 오인을 유발하고, 공정한 시장경쟁을 저해하는 위법한 행위로 판단될 수도 있어 유의해야 한다. 또한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 판매자의 경우 제조국, 제조시기 등 해당 품목의 안전기준에서 정한 표시사항이 부착된 제품을 판매해야 한다는 점도 알아둘 필요가 있다.

KC마크 표시의무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에 대한 KC마크 부착은 문제될 수 있어

최초 시행된 「전안법」에 따르면 250개의 안전관리대상제품 모두 KC마크가 있어야만 구매대행이 가능했다. 하지만 개정 「전안법」으로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대상 전기용품의 일부와 안전인증대상 생활용품의 일부를 제외한 215개 제품의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KC마크 표시 없이 구매대행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사업자가 인터넷을 통해 구매대행을 하는 경우 KC마크가 표시된 제품에 대해서는 구매대행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사실과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실 이외에 KC마크 및 안전인증번호 또는 안전확인신고번호도 고지해야 한다. 또한 구매대행업자가 자신이 직접 구매대행을 한 제품 및 해당 제품과 동일한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소비자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을 자발적으로 중지해야 하고, 위반 시 처벌규정이 있다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기존 39개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 중에서
제품의 특성, 중대사고의 발생 사례,
외국의 안전관리제도 등을 고려해 상대적으로
위해성이 낮은 의류와 안경테, 가죽제품 등 23개 품목을
안전기준준수대상 생활용품으로 지정했다.



구매대행을 한 제품의 위해성을 인지할 경우 해당 제품의 구매대행을 중지해야

개정 「전안법」에 따르면 병행수입 제품에 대한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이 면제된다. 면제를 받기 위해서는 병행 수입하고자 하는 제품과 동일한 모델에 대해서 병행수입업자가 해당 제품의 사진을 시험·인증기관에 제출해 정식 수입업자가 이미 안전인증 등을 받은 제품과 동일한 모델임을 확인받아야 한다.

한편 병행수입하려는 제품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생활용품인 경우 병행수입업자가 관련 제품의 사진을 통해 해당 제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반면,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 전기용품의 경우 해당 제품의 사진을 한국제품안전협회에 신고하는 절차가 있음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병행수입업자가 병행수입 제품에 대해 안전인증 등을

면제 받았을 경우 제품 또는 포장에 병행수입을 통해 유통되는 제품이라는 사실과 「전안법」에 따른 안전관리대상제품이라는 사실을 표시해야 한다. 인터넷을 통해 병행수입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사실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한다.

병행수입 제품의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면제를 위해서는 시험인증기관의 확인 필요

개정 「전안법」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전기용품 안전관리체계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강화된 규제,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의 거래형태에 대해 새롭게 적용하려던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다.

정부는 개정안 마련 과정에서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의견수렴 및 협의를 진행함은 물론, 시행 전 업계에 대한 설명회를 폭넓게 개최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개정 「전안법」은 그

내용 및 절차적인 측면에서 제품안전규제를 합리화하는 조치로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최초 「전안법」의 제정에서부터 최근 개정 「전안법」의 시행까지 일련의 과정으로부터 제품안전규제체계 및 「전안법」의 향후 발전방향과 관련해 중요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전안법」은 제품에 대한 사전 안전관리를 중심으로 한 정부와 기업 간의 관계를 규율하는 공법이자 행정규제법이라고 할 수 있다. 「전안법」상 제품안전규제는 국민과 소비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사회적 규제로서의 성격과 제품, 기술, 기업, 산업 등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규제로서의 성격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안전 자체는 타협의 대상이 될 수 없겠지만, 「전안법」 사례는 국민안전을 도모하는 제품안전규제의 적정성 여부는 언제든지 평가 또는 판단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즉 제품안전규제는 ‘제품의 위해성 정도에 비례해야 한다’는 단순하지만 명확한 원칙을 놓고 보면 최초 시행된 「전안법」은 일부 생활용품에 대해 위해성 평가가 달라지지 않은 상태에서 전기용품의 안전규제 방식을 획일적으로 적용함으로써 과잉규제 상황을 초래한 것으로 이해된다. 결국 제품안전규제의 변경은 그것이 규제의 강화이던 완화가이던 위해성 평가에 기초할 때 과잉 또는 과소규제 논란을 피할 수 있고, 규제방식의 통합과 같은 형식적인 측면은 위해성 수준이 동일한 제품군 내에서만 보완적인 규제개선의 기준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제품안전규제는 제품의 위해성 정도에 비례해야 과잉 또는 과소규제를 피할 수 있어

기술의 급격한 변화 및 발전으로 기존의 위해성 평가 자체가 달라져야 하는 경우, 자율주행자동차, 드론, 3D프린팅, 사물인터넷 등 새로운 기술이 접목된 제품 등과 같이 위해성 평가 및 안전기준의 정립이 어려운 경우 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비례원칙만으로 「전안법」상 제품안전규제의 적정성을 담보하기 어려워 보인다.

즉,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급변하는 기술과 제품을 대상으로 사전적으로 안전을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전안법」은 구조적으로 심각한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국민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정부의 의지와 노력이 기술, 제품 및 시장의 변화 속도를 앞설 수는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품안전규제체계 및 「전안법」을 적정하게 운용하기 위해서는 다각적인 접근과 노력이 필요하다. 우선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위해성 및 안전기준이 주기적으로 검토되도록 하고, 첨단기술 분야에 있어 사업자들이 참여하는 자율안전규제가 시범적으로 작동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규제개혁이 강조되고 있는 현 시점에서 「전안법」은 국민안전을 담보하면서도 기술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혁신적 규제체계를 갖출 것을 요구받고 있다. 

이 글은 개정 「전안법」 일반에 대한 필자 개인의 의견이며 「전안법」의 제정·개정 취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국가법령정보센터 및 산업통상자원부(국가기술표준원)의 자료를 참조하였음을 밝힙니다.



개정 「전안법」은 생활용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전기용품 안전관리체계로 통합하는 과정에서
의도하지 않게 강화된 규제, 구매대행, 병행수입
등의 거래형태에 대해 새롭게 적용하려던 규제
등을 합리적으로 재정비한 것이다.